

• 시간제 고용문제 논란 여전

노동계, '여성노동력 저임금화 의도' 비난

'시간제노동자보호특별법' 제정 주장

'시간제 고용 확대안'을 두고 정부측·사용자·노동자측의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최근 노동부가 이와 관련된 지침을 발표해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지난 7일 노동부는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 근로시간(주44시간)의 7할(30.8시간) 미만인 노동자에게는 주휴일,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유급생리휴가, 산전후유급휴가를 부여치 않아도 되며 이를 노사가 결정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9월에 총액임금제 도입, 시간제 노동자 조항 신설 등의 10가지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자 일단 노동부는 노동법 개정을 유보하고 이를 시행령, 또는 시행지침을 통해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던 것.

시간제 노동자와 관련된 이번 지침에 대해 노동관련 단체들은 즉각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노동관련단체는 "정부가 '유휴인력활용'이라는 명목 아래 여성노동력을 저임금화 시키려는 의도에 다른 것"이라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회장 이효재)도 지난 12일 시간제 고용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그간 여성의 복지를 위해 각종 제도를 마련해왔던 정부가 생리휴가와 산전후 휴가를 안주

겠다는 것은 모성보호에 어긋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즉 이런 지침은 결국 기업주들이 노동부 지침을 '악용'해 여성에게 저임금을 지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규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시간제 노동자로 대체함으로써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애초에 정부가 시간제 취업방안을 고민하게 된 배경은 제조업체의 만성적인 인력난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노동부의 '전국 주요공단 고용실태조사'에 따르

면 많은 기업주들이 관리가 힘들고 회사에 귀속감이 없으며 책임감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고용의사가 없음이 밝혀져 주로 서비스 판매직종 등에서 시간제 노동자를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만성인력난 타개책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관련업계의 반응이다.

한국노동자총연맹 이정식 씨는 "시간제 노동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1차적으로 기존의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기업주는 노조와

합의해 시간제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고 2차적으로 시간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간제 노동자 보호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여성민우회측이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설문지에 의하면 노조측은 '노조약화'를 우려하면서도 시간제 노동자들을 노조에 가입시키는 문제는 대부분 고려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향후 사용자, 노조와 시간제 노동자간의 갈등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여성민우회측은 전망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시간제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조결성, 가입, 활동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표준근로계약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문에 따르면 대부분의 파트타임 여성 노동자들은 정규직 사원들의 55~60%에 해당하는 저임금을 지급받을 뿐만 아니라 생리휴가, 의료보험, 퇴직금 등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여성신문 만평 반쪽이

